

<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
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신규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7. (생략) 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삭제 2. (생략) 3. <u>부탄 : 1톤당 62,283원</u> 4. 삭제	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---- ----- ----- 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삭제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부탄</u> <u>가. 2026년 12월 31일까지 : 면제</u> <u>나. 2027년 1월 1일 이후 : 1톤당</u> <u>62,283원</u> 4. 삭제